

의안번호	2211246
의 퇴 인	엄태영의원
회 답 일	2025.9.15.
추계번호	25B3664
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7조의2 신설 (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의 육성)	산림청장 및 시·도지사는 임업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을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함(제1항) 산림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을 육성·지원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함(제2항) 1.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에 대한 교육 2.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에 대한 창업 자금 지원 3.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의 주거 및 생활기반 조성 4.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에 대한 임업 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 5. 그 밖에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의 육성·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	의무규정
2	안 제17조의3 (임업분야교육 지원 등)	산림청장은 임업분야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고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임업 및 산림 분야 계열학교가 실시하는 임업실습교육, 임업창업교육 등 임업분야 교육을 지원할 수 있음(제1항) 산림청장은 임업분야의 고용 창출, 창업에 대한 활성화 및 예비임업인과 청년임업인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)
1	안 제17조의2 (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의 육성)	×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7조의3 (임업분야교육 지원 등)		

2. 상세 사유

□ 개정안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·도지사가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을 육성·지원하기 위하여 교육, 창업자금 지원, 주거 및 생활기반 조성, 임업 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하고, 산림청장이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 육성을 위하여 임업 분야 교육 지원 등 사업을 시행할 경우, 기존 사업의 확대 또는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
○ 현행법 제17조는 산림청장 또는 시·도지사로서 하여금 임업후계자 및 독립가를 선발·선정하여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⁾

－ 동법 시행규칙 제21조²⁾ 및 시행령 제15조³⁾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 임업후계자와 독립가에 대하여 1) 임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2) 기자재의 지원 3) 성과가 우수한 자에 대한 포상과 해외연수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음

－ 참고로, 산림청은 동법 제4조⁴⁾ 및 제18조⁵⁾에 따라 「임업기능인 양성」 사업을 통

1) 제17조(임업후계자 등의 육성) ① 산림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후계자를 선발하고, 임업후계자가 지역사회의 임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 ② 산림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가를 선정하고 독립가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2) 제21조(임업후계자의 선발 및 지원 등) ④산림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 임업후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자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1. 임업경영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
2. 임업경영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지원
3. 경영실적이 우수한 임업후계자에 대한 포상과 해외연수

⑤산림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 임업후계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임업후계자로 구성된 법인에 제4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.

3) 제15조(독립가에 대한 지원) ①산림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 독립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자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1. 임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
2. 임업경영에 필요한 기자재의 지원
3. 경영실적이 우수한 독립가에 대한 포상과 해외연수
4. 임업경영에 필요한 기술훈련·정보제공 등의 지원

②산림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 독립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독립가로 구성된 법인에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.

4) 제4조(재정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 이 경우 산림의 공익성, 투자기간의 장기성, 저수익성 등 임업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조림 또는 육림
2. 임업종묘의 생산
3. 임산물의 생산·유통·이용·가공 또는 보관
4. 임도의 조성·유지 또는 관리
5. 임업인의 산촌정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

해 임업기능인 교육훈련을 위한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, 해당 예산은 2025년 기준 9억 1,200만원임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인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의 규모와 지원의 범위 및 수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나, 현시점에서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의 규모를 특정할 수 없고,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 육성·지원 시책 및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추계가 어려움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장우윤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우윤	02-6788-3735	jangwy93@assembly.go.kr

-
- 5의2. 임업기계장비의 개발·보급 및 교육
6. 임업경영규모를 늘리기 위한 산림의 취득
7. 그 밖에 임업경영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- 5) 제18조(임업기능인의 양성) ①산림청장 및 시·도지사는 임업분야의 기능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기능인을 양성하고, 취업알선,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개선 등 기능인의 지위를 높여줄 수 있는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.